**제2562호**
**2018. 01. 24.**

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 집 인 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전화 : 3396-4952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| 선 | 기관의장 |
|---|---|
| 람 | |

# 구 보

◉ 고 시
제2018-3호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····· 2
제2018-4호 :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····· 4

◉ 공 고
제2018-5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·· 5
제2018-71호 :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 ····· 8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◉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◉ 구보는 수시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
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| 공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람 | | | | | | | | | | | | |

서울특별시중구

# 고 시

◉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3호

##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42호(2009.12.31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1-67호(2011.10.27.), 중구고시 제2015-40호(2015.6.3.), 중구고시 제2017-131호(2018.1.3.)로 정비계획·구역 (경미한)변경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-12호(2012.2.3.)로 사업시행인가 및 중구고시 제2015-68호(2015.8.20.), 중구고시 제2015-110호(2015.12.23.), 중구고시 제2017-132호(2018.1.3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우리 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대로 공사완료되었기에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고시합니다.

**2018년 1월 일**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**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**

**나.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**
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(11,360.5m$^2$)

2) 명 칭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

**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**

1) 성 명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배종일)

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42-1, 2층

**라. 준공인가의 내역**

1) 토 지

| 구 분 | 명 칭 | | 면 적 (㎡) | 비 율(%)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합 계 | | | 11,360.5 | 100.0 | |
| 택 지 | 소 계 | | 9,603.8 | 84.5 | |
| | 택 지 | | 9,603.8 | 84.5 | 공동주택 |
| 정비기반시설 | 소 계 | | 1,756.7 | 15.5 | |
| | 도 로 | | 1,284.8 | 11.3 | |
| | 공원 | 소 계 | 471.9 | 4.2 | |
| | | 소공원 | 427.0 | 3.8 | |
| | | 체육공원 | 44.9 | 0.4 | 교환필지 |

2) 건축시설

| 구 분 | | 규 모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건축면적 | | 2,558.93 $m^2$ | |
| 연면적 | 소 계 | 32,552.40 $m^2$ | |
| | 지상층 | 21,846.78 $m^2$ | |
| | 지하층 | 10,705.61 $m^2$ | |
| 층 수 | | 지하2층/지상14층 | |
| 주용도 | | 공동주택(4동, 19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 | |

3) 정비기반시설

가) 도로

| 규 모 | | | | 기능 | 연장 (m) | 기점 | 종점 | 사용 형태 | 주요 경과지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등급 | 류별 | 번호 | 폭원 (m) | | | | | | | | |
| 대로 | 2 | 20 | 28~43 (31) | 주간선 도로 | 1,600 (60) | 봉래정3정동 (만리동2가 11-4) | 공덕동 (만리동2가 2 30-1) | 일반 도로 | - | 총고757호 (1939.9.18) | 대로변 구역연장 만큼 3m확폭 (완화차로 확보) |
| 중로 | 1 | - | 20 | 국지 도로 | 95 | 만리동2가 117-4 | 만리동2가 110 | 일반 도로 | - | 건고560호 (1963.9.19) | 아래 ※ 1) 내용 |
| 소로 | 3 | - | 6 | 국지 도로 | 58 | 만리동2가 (11-4) | 만리동2가 (10-94) | 일반 도로 | - | 서고 제2009-542호 (2009.12.31) | 6m신설 |

※ 1)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387호(2007.10.25.)호로 소로(6m)→중로(20m) 변경

: 인접 만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7m, 본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서 7m 확보

※ ( )는 정비구역 내 연장

나) 공원

| 시설의 종류 | | 위치 | 면적(㎡) | 최초 결정일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명칭 | 세분류 | | | | |
| 공원 | 소공원 | 만리동2가 12-53번지 | 427.0 | 서고 제2009-542호 (2009.12.31) | |
| 손기정 체육공원 | 체육공원 | 만리동2가 6-1번지 일원 | 44.9 (29,682.2) | 건고 제469호 (1987.9.18) | 교환필지 44.9㎡ |

※ 정비구역 내 공원면적 44.9㎡은 체육공원에 포함

◉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4호

# 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「도로명주소법」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**2018년 1월 일**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**○ 도로명주소**

| 연번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| 폐지사유 |
|---|---|---|---|
| 1 |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11 | 2018.01.24 | 건물철거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**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**

- 도로명주소는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**○ 참고사항**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-50호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**2018년 1월 17일**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#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 1. 개정이유

□ 우리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남대문지역상담센터(쪽방상담소)가 시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□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【별표3】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 복지시설(제3조 관련) 중 '남대문지역상담센터' 삭제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사회복지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(예관동), 문의전화:3396-5392, FAX:3396-8736, 메일:sj4936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1.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각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**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**

| 주관부서 | 시 설 명 | 위 치 | 주 요 기 능 |
|---|---|---|---|
| 복지지원과 | 신당종합사회복지관<br>유락종합사회복지관<br>중림종합사회복지관 | 동호로11길 22(신당동)<br>퇴계로 460(신당동)<br>서소문로6길 16(중림동) | 1. 사례관리<br>2. 서비스제공<br>3. 지역조직화 |
| 사회복지과 | 약수노인종합복지관 | 다산로6길 11(신당동) | 1.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 서비스 제공<br>2.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<br>3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|
| |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<br>남산실버복지센터<br>신당데이케어센터 | 필동로 96 (장충동2가)<br>동호로5길 189 (신당동)<br>다산로25길 6 (신당동) | 1.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·보호 |
| | 중구장애인복지관 | 퇴계로 460 (신당동)<br>중구종합복지센터2,4,5층 | 1.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·재활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|
| | 삭제 | | |

## 현 행

[별표]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

| 주관부서 | 시 설 명 | 위 치 | 주 요 기 능 |
|---|---|---|---|
| 복지지원과 | 신당종합사회복지관<br>유락종합사회복지관<br>중림종합사회복지관 | 동호로11길 22(신당동)<br>퇴계로 460(신당동)<br>서소문로6길 16(중림동) | 1. 사례관리<br>2. 서비스제공<br>3. 지역조직화 |
| 사회복지과 | 약수노인종합복지관 | 다산로6길 11(신당동) | 1.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<br>2.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<br>3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|
| |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<br>남산실버복지센터<br>신당데이케어센터 | 필동로 96 (장충동2가)<br>동호로5길 189 (신당동)<br>다산로25길 6 (신당동) | 1.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·보호 |
| | 중구장애인복지관 | 퇴계로 460 (신당동)<br>중구종합복지센터<br>2,4,5층 | 1.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·재활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|
| | 남대문지역상담센터 | 세종대로2길 15, 4층<br>(남대문로5가) | 1. 쪽방 주민들을 위한 상담, 취업알선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|

## 개 정 안

[별표]

###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(제3조 관련)

| 주관부서 | 시 설 명 | 위 치 | 주 요 기 능 |
|---|---|---|---|
| 복지지원과 | 신당종합사회복지관<br>유락종합사회복지관<br>중림종합사회복지관 | 동호로11길 22(신당동)<br>퇴계로 460(신당동)<br>서소문로6길 16(중림동) | 1. 사례관리<br>2. 서비스제공<br>3. 지역조직화 |
| 사회복지과 | 약수노인종합복지관 | 다산로6길 11(신당동) | 1.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<br>2.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<br>3.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|
| |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<br>남산실버복지센터<br>신당데이케어센터 | 필동로 96 (장충동2가)<br>동호로5길 189 (신당동)<br>다산로25길 6 (신당동) | 1. 치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·보호 |
| | 중구장애인복지관 | 퇴계로 460 (신당동)<br>중구종합복지센터<br>2,4,5층 | 1.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·재활·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|
| | 삭제 | | |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8-71호

#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 모집 공고

『영유아보육법』 제24조 및 『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』 제14조 ~ 제16조에 따라 「서울 중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」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**2018년 1월 25일**

**서울특별시 중구청장**

## 1. 위탁대상 시설현황

| 시 설 명 | 소 재 지 | 규 모(㎡) | 아동현황(정원) | 개 원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만리 어린이집 | 중구 만리재로 175 (만리동2가) | 1,538㎡ (지하2~지상2) | 90명 | 83.6.24. | 시간연장 |

## 2. 위탁 기간 : 계약일로부터 5년

## 3. 신청 자격

**가. 법인 또는 단체 :**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

**나. 개 인 :**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(단, 공고일 현재 민간·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)

**다. 공 통 :** 운영체의 원장내정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

## 4. 신청 제외 대상

가. 『영유아보육법』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나.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(자)

다.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(시정명령 제외)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

라. 운영주체의 지도·감독시 공신력,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자

마. 주된 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

## 5. 신청서 접수

가. 공고기간 : **2018. 1. 25.(목) ~ 2018. 2. 13.(화)**

나. 접수기간 : **2018. 2. 5.(월) ~ 2018. 2. 13.(화) 18:00까지**

다. 접수장소 : 중구청 여성가족과 (본관 1층)

라. 접수방법 :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접수 (월~금, 09:00~18:00)

(※토요일 · 공휴일 및 우편, 택배, 인터넷 접수는 불가함)

마. 제출서류

| 구분 | 서류항목 | 운영체 | |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법인 | 단체 | 개인 | |
| 개별사항 | ■법인의 정관, 등기부 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(법인 인감증명서 첨부) | ○ | | | |
| | ■등록증 또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| | ○ | | |
| | ■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 | ○ | ○ | | |
| | ■주민등록등본,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| | | ○ | |
| 공통사항 | ■어린이집 위탁 신청서<br>■이력서, 자기소개서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<br>■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(법인, 단체의 경우 대표자, 원장)<br>■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(자산현황)<br>- 부동산(등기부등본), 동산(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)<br>- **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**<br>- 법인(법인명의 재산), 단체(단체명의 재산), 개인(부부합산)<br>■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<br>■자부담 승낙서<br>■어린이집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<br>■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(평가 등) | | | | **※첨부의 제출서식의 거짓작성** |

바. 제출부수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8부 (원본 1부, 사본 17부), 요약서 (18부, 3~5페이지 분량)

**※ 폭수표시 요망 및 자산현황 관련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)는 원본에만 첨부**

- 심사자료는 양면 인쇄, 쪽 표시, 목차 라벨 표시, 반드시 제본
- 면접심사 발표용 PPT를 2018. 2. 20.(화) 18시까지 e-mail 제출

## 6. 사업설명회 : 생략

※ 구청방문시 시설개요, 위탁시설 업무, 위탁절차, 자료작성 및 심의기준 등 설명

## 7. 위탁조건

가.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함

나.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(영아 · 장애아 · 시간연장 · 다문화아동)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특히 각 시설별 보육유형에 의한 취약보육은 반드시 실시하고 구에서 권장하는 취약보육에 대해 우선 실시하여야 함

다.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
라.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,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지침, 중구 영유아보육조례, 위·수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22조(위탁의 취소 및 해지)규정에 의거 위탁 취소

마.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**「어린이집 사무 위·수탁계약서」**로 별도 계약 체결

## 8.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

가. 선정방법 :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 및 면접심사 후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**(※ 심사일은 별도 통지)**

나. 심사항목 : 5개 분야

- 어린이집 운영계획,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,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, 운영체의 공신력, 운영체의 재정능력

**※「2018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(신규·변경) 공통심사 기준표 항목」참고**

다. 면접방법 : 법인·단체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(PPT발표)후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 (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)

라. 결과발표 : 중구 홈페이지 공개 및 선정 수탁자에게 개별통지

## 9. 유의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**제출 후 열람·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**

나. 접수된 서류 중 중요서류 미비 및 서류의 내용이 관계기관 확인시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심의 제외,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

다. 위탁 운영조건 등 관련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.

라.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

마. 법인·단체(개인) 대표자(당일 위임자)와 원장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및 원장의 전문성 면접 실시함.

바.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체 선정을 무효로 함

사. 위탁신청서는 중구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「고시/공고」에 공고문과 게재 함

아. 위탁신청서류 제출 시 요약서(3~5페이지 분량)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.

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여성가족과**(☎02-3396-5412)로 문의**